Sunshine GWANGYANG
광 양 시

시 보

시보는 공공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람	기관의 장

제34호(호외) 2021. 8. 27.(금)

공 고

광양시 공고 제2021-1621호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 1

광양시 공고 제2021-1627호 방치선박(폐선) 제거 공고 ---------- 11

회람										

▶발행 : 광양시 ▶편집 : 홍보소통실 (☎797-1944, 행정1945)

광양시 공고 제2021-1621호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제정 입법예고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 8. 27.

광 양 시 장

1. 조례명

가.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건립사업을 통해 개설하는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및 편의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6조)

나. 도매시장 운영주체 지정 및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16조)

다. 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22조)

라. 도매시장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3조～제27조)

마. 운영주체 지정취소 및 보고·검사 등에 관한 사항(안 제28조～제34조)

4. 입법예고기간 : 2021. 8. 27. ~ 9. 16. (20일간)

5. 제정안 : [붙임 2] 참고

6. 의견제출

가. 본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9. 16.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광양시장(철강항만과 해양수산팀, 전화 061-797- 2860, 팩스 061-797-2587)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2.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제정(안) 1부. 끝.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붙임 2]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설치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광양시에 설치하는 수산물 종합 유통물류센터 내 도매시장 및 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매시장'이란 광양시장이 어류, 패류, 갑각류, 해조류 등의 수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매하게 하기 위하여 개설한 시장을 말한다.
2. '위탁'이란 광양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수산업 관련 기관 또는 법인, 단체를 도매시장법인 등으로 지정하여 수산물 도매시장을 운영·관리하게 함을 말한다.
3. '수탁'이란 시장으로부터 도매시장법인 등으로 지정받아 운영관리함을 말한다.
4. '운영주체'란 도매시장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수탁기관(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을 말한다.
5. '시설'이란 도매시장과 관련된 건축물, 전기. 전자제품, 기계류, 운송장비 그 밖에 설비 등을 말한다.

제3조(도매시장 명칭 · 장소 · 면적)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의 명칭 · 위치 및 면적은 다음과 같다.

명 칭	취급품목	위 치	면 적(제곱미터)		
			대 지	건 물	
				건축면적	연면적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수산물	광양시 중동 1815-8번지	6,303.50	2,152.92	6,649.38

제4조(휴업일 및 영업시간) ①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의 운영은 연중무휴로 한다.

② 도매시장의 영업시간은 04: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휴업일 및 영업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도매시장의 거래품목) ① 도매시장의 거래품목은 수산물인 생선어류・건어류・염건어류・염장어류・조개(패)류・갑각류・해조류 및 젓갈류 등으로 한다.

② 그 밖의 품목: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과 이를 단순 가공한 물품으로서 시장이 승인하는 품목

제6조(도매시장 공판장의 운영 등에 관한 특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도매시장 공판장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제2장 도매시장 운영주체 지정 및 위탁

제7조(도매시장 개설자의 의무 및 관리) ① 시장은 도매시장 개설자로서 도매시장(공판장 포함)의 거래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도매시장시설의 정비·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2.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환경개선
3.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와 포장개선 및 선도유지의 촉진
4. 도매시장법인 등 유통업무 종사자에 대한 지도·감독
5. 기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의거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도매시장 관리사무소를 두거나 지방공사, 공공출자법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도매시장법인의 지정) ① 시장은 도매시장법인 등 운영주체를 선정 할 경우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에 따라 광양시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자 지정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하며, 위탁기간이 만료된 운영주체를 재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평가결과 부진 등 도매시장의 원활한 운영이 어려운 경우 공모절차를 통하여 신규 법인을 지정하도록 한다.

③ 제1항의 도매시장 위·수탁에 따른 모집, 관리책임, 위탁범위 등 제반사항 결정은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9조(도매시장법인 등의 지정・허가・등록) ①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규모 및 거래액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의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중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유통인·출하자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매시장법인(공판장을 포함한다)은 1개 법인으로 하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도매인의 법인의 수도 1개 법인 이하로 한다.

③ 도매시장 운영을 수탁받고자 하는 자는 업무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30일 이내 지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도매시장 관계인 등) ①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도매시장 내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와 산지유통인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 수산물을 출하하고자 하는 자는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도매시장법인의 매매방법) ①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에서 수산물을 경매·입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의 방법으로 매매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매매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매매할 수 있다.

② 정산창구의 형식, 운영·관리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며, 시장은 정산창구로 하여금 대금결제 내역 또는 운영주체의 예치자금 현황 등을 제출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③ 도매시장법인이 제1항에 따라 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를 한 경우에는 거래 익일까지 정가매매(수의매매)결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법인의 보증금 · 담보물의 관리) ①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성실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당해 중도매인의 미수금정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도매시장법인은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그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시장법인은 거래보증금을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도매시장 사용료 등)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 및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도매시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징수하는 도매시장 사용료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1. 시장이 징수할 사용료의 총액(이하 "총사용료"라 한다)은 도매시장 거래금액의 1천분의 5로 정한다.
2. 정가·수의매매를 전자거래 방식으로 할 경우에는 거래한 물량에 대하여는 해당 거래금액의 1천분의 3으로 한다.
3. 운영주체가 납부할 사용료는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 시장은 법 제42조제1항제2호 및 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시설은 필수시설 중 저온창고시설, 상온창고, 중도매인 점포, 중도매인 사무실, 대금정산조직 사무실로 하며 연간 시설 사용료는 해당 시설의 재산가액의 1천분의 50(중도매인 점포·사무실의 경우에는 재산가액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도매시장의 시설 중 도매시장 개설자의 소유가 아닌 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③ 시장은 도매시장 위탁시설 이외의 시가 직접운영하는 시설은 "광양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순자산액 비율) ① 운영주체가 확보하여야 할 순자산액(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비율은 순자산액이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전년도 거래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의한 연간 예상거래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15이상으로 한다.

② 운영주체는 분기별 순자산액 확보 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지원)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운영주체의 요구로 그 불가피한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도매시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조건, 감면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6조(사업연도) 도매시장 사업연도는 광양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장 도매시장의 운영

제17조(운영) ① 운영주체는 시설물관리, 수산물 수집·분배·수출기능 등을 통합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수산업협동조합, 산지유통센터, 생산자단체 및 대규모 출하어가 등과 소비자의 다량 수요처를 직접 연결하는 등 수산물의 가격안정을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광양시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최우선 취급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수산물의 양이 품목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시장은 제한할 수 있다.

④ 운영주체는 수산물 표준화·기계화·규격화 등을 통하여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예냉시설 등 저온유통 시스템으로 상품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출하자에게 산지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시장관리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도매시장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매시장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

③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19조(도매시장 거래분쟁 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수산물 거래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해 법 제78조의2에 따라 거래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조정위원회의 직무 및 위원회의 운영, 위원의 자격에 관한사항은 "업무규정"으로 정한다.

제20조(대금결제) ① 운영주체는 정산창구를 통하여 수탁한 물품이 매매된 때에는 그 대금결제에 관하여 위탁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즉시 당해 위탁자에게 매매대금을 결제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매대금 등의 결재기한 후 7일이 경과하여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출하자는 미지급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의 지급 청구할 수 있다.

제21조(출하자 손실보전금) ① 시장은 운영주체로 하여금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별도로 적립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전년도 상장수수료의 1000분의 3이상으로 손실보전 공제금을 확보하되, 그 최저 적립금은 1천만원으로 한다.

제22조(반입물품의 제한) 운영주체는 도매시장에 반입된 물품중 시장이 위생상 유해하다고 판정하거나 법령으로 그 소지나 거래가 제한 또는 금지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의 판매, 수탁을 거부하여야 한다.

제4장 도매시장 시설관리

제23조(운영주체의 의무 및 책임) ①운영주체는 도매시장의 토지·건물·물류장비 등의 위탁받은 재산을(이하 "시설"이라 한다) 유지·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개·보수, 유지관리, 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도매시장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 환경 및 위생처리 대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기타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도매시설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되는 제반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도매시장 내에서 사용되는 하역장비 등 매매거래에 필요한 기구에 대하여 부담 및 확보하여야 한다

제24조(전대의 금지) 운영주체는 사용의 지정을 받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전대 등이 불가피한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시설변경의 금지) 도매시장 내 시설을 사용하는 운영주체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건축·증축·개보수·철거·훼손·망실 등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장은 운영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구할 수 있다.

제26조(시설반환) 운영주체는 해산·폐업·지정취소·기타 사유로 인하여 운영자격이 상실한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하며, 운영주체가 원상회복하지 못할 경우 보증인·청산인·대리인이 대신 하여야 한다.

제27조(수산물 안전성 검사) 시장은 법 제38조의 2에 따른 시장 내 반입·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하여 식품 위생상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관한 안전성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8조(지정의 취소 등) ① 법 제82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은 운영주체가 규정 위반 및 실적미달 등으로 원활한 시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한다.

③ 운영주체는 지정 또는 승인이 취소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시정·조치 명령 등을 위반하였을때 행정처분 기준은 시행규칙 제56조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의하며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례에 준하여 처분한다.

제30조(휴·폐업 허가) ① 운영주체가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20일 전까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폐업예정일 60일 전까지 도매시장 개설자인 시장에게 휴·폐업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유통인·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시보 또는 도보에 공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운영주체와 시장관계인 등의 휴·폐업 승인 후 빠른 시일내 지정 허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31조(도매업무의 대행) 시장은 운영주체가 허가취소 또는 행정처분, 휴·폐업 등으로 도매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운영주체에게 도매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운영주체는 월별 거래실적 및 미수금 내역을 매월 마지막 결제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매년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매시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주체에 대하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3조(지도 · 감독 등) ① 시장은 운영주체와 중도매인·매매참가인·산지유통인,출하인 등에 대하여 수산물의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사항을 정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보고명령을 받은 중도매인 등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업무집행 상황보고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업무규정”에 정한 바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4조(조례의 해석 및 업무규정) 이 조례에 명문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광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광양시 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 업무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광양시 공고 제 2021 - 1627호

방치선박(폐선) 제거 공고

우리시 항포구 및 해안가 등에 선박(폐선)을 방치하여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해양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선박에 대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오니 이의신청이나 문의 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2021년 9월 9일까지 광양시 철강항만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26일

광 양 시 장

1. **공 고 기 간** : 2021. 8. 26. ~ 2021. 9. 9. (14일간)
2. **제거대상선박** : 11척(아래와 같음)
3.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공유수면관리 및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의거 공고기간 경과 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폐기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공유수면 내에 선박을 버리거나 방치한 행위자에 대하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4조의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해당 선박의 이해관계인(압류 및 저당권 설정자 등)은 공고 기한 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폐기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기타사항** : 문의사항은 광양시 철강항만과(061-797-3365)로 연락바랍니다.

[별지 제5호서식]

광양시 공고 제 2021 - 1627호

방 치 선 박 제 거 공 고

발견장소	광양시 광영동 1507-115번지 일원			
선 박 제 원	선명(명칭)	미상	선박(어선)번호	미상
	선 적 항	미상	톤 수	약 1 톤 (추정)
	주요치수	길이 4 m × 너비 1.5 m × 깊이 0.7 m		
관 리 청		광양시	관 리 번 호	광양시 2021-1
제거 예정일자		2021년 9월 9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제 거 방 법		직권 제거		
공매장소 및 일시		해당사항없음		
입 찰 보 증 금		해당사항없음		

방치선박 전경사진

위 물건은 방치 선박으로써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 등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1년 9월 9일(목)**까지 우리시 철강항만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26일

광 양 시 장

담당 : 광양시 철강항만과(061-797-3365)

[별지 제5호서식]

광양시 공고 제 2021 - 1627호

방 치 선 박 제 거 공 고

발견장소	광양시 광영동 1507-115번지 일원			
선박 제원	선명(명칭)	미상	선박(어선)번호	미상
	선 적 항	미상	톤 수	약 1 톤 (추정)
	주요치수	길이 3 m × 너비 1.3 m × 깊이 0.7 m		
관 리 청		광양시	관 리 번 호	광양시 2021-2
제거 예정일자		2021년 9월 9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제 거 방 법		직권 제거		
공매장소 및 일시		해당사항없음		
입 찰 보 증 금		해당사항없음		

방치선박 전경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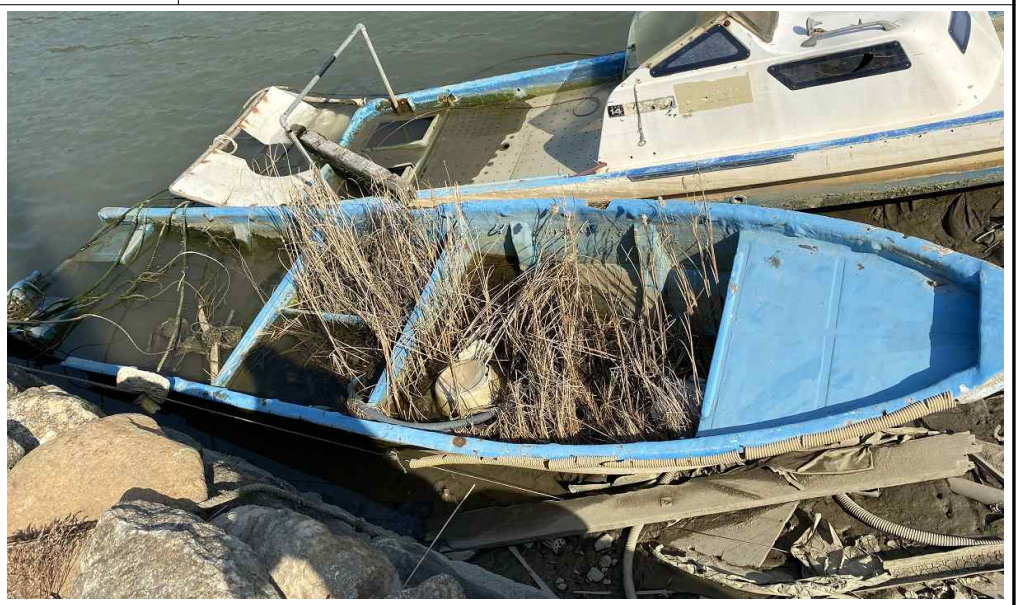

위 물건은 방치 선박으로써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1년 9월 9일(목)**까지 우리시 철강항만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26일

광 양 시 장

담당 : 광양시 철강항만과(061-797-3365)

광양시 공고 제 2021 - 1627호

방 치 선 박 제 거 공 고

<table>
<tr><td colspan="2">발견장소</td><td colspan="4">광양시 광영동 1507-115번지 일원</td></tr>
<tr><td rowspan="3">선 박
제 원</td><td>선명(명칭)</td><td>미상</td><td>선박(어선)번호</td><td colspan="2">미상</td></tr>
<tr><td>선 적 항</td><td>미상</td><td>톤 수</td><td colspan="2">약 1 톤 (추정)</td></tr>
<tr><td>주요치수</td><td colspan="4">길이 4 m × 너비 1.5 m × 깊이 0.8 m</td></tr>
<tr><td colspan="2">관 리 청</td><td colspan="2">광양시</td><td>관 리 번 호</td><td>광양시 2021-3</td></tr>
<tr><td colspan="2">제거 예정일자</td><td colspan="4">2021년 9월 9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td></tr>
<tr><td colspan="2">제 거 방 법</td><td colspan="4">직권 제거</td></tr>
<tr><td colspan="2">공매장소 및 일시</td><td colspan="4">해당사항없음</td></tr>
<tr><td colspan="2">입 찰 보 증 금</td><td colspan="4">해당사항없음</td></tr>
<tr><td>방치선박
전경사진</td><td colspan="5"> </td></tr>
</table>

위 물건은 방치 선박으로써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1년 9월 9일(목)**까지 우리시 철강항만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26일

광 양 시 장

담당 : 광양시 철강항만과(061-797-3365)

광양시 공고 제 2021 - 1627호

방 치 선 박 제 거 공 고

발견장소	광양시 광영동 1507-115번지 일원			
선박 제원	선명(명칭)	미상	선박(어선)번호	미상
	선 적 항	미상	톤 수	약 1 톤 (추정)
	주요치수	길이 3.5 m × 너비 1.5 m × 깊이 0.7 m		
관 리 청		광양시	관 리 번 호	광양시 2021-4
제거 예정일자		2021년 9월 9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제 거 방 법		직권 제거		
공매장소 및 일시		해당사항없음		
입 찰 보 증 금		해당사항없음		

방치선박 전경사진

위 물건은 방치 선박으로써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6조 등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1년 9월 9일(목)**까지 우리시 철강항만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26일

광 양 시 장

담당 : 광양시 철강항만과(061-797-3365)

광양시 공고 제 2021 - 1627호

방 치 선 박 제 거 공 고

<table>
<tr><td>발견장소</td><td colspan="4">광양시 광영동 1507-115번지 일원</td></tr>
<tr><td rowspan="3">선 박
제 원</td><td>선명(명칭)</td><td>미상</td><td>선박(어선)번호</td><td>미상</td></tr>
<tr><td>선 적 항</td><td>미상</td><td>톤 수</td><td>약 1 톤 (추정)</td></tr>
<tr><td>주요치수</td><td colspan="3">길이 3.5 m × 너비 1.5 m × 깊이 0.7 m</td></tr>
<tr><td colspan="2">관 리 청</td><td>광양시</td><td>관 리 번 호</td><td>광양시 2021-5</td></tr>
<tr><td colspan="2">제거 예정일자</td><td colspan="3">2021년 9월 9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td></tr>
<tr><td colspan="2">제 거 방 법</td><td colspan="3">직권 제거</td></tr>
<tr><td colspan="2">공매장소 및 일시</td><td colspan="3">해당사항없음</td></tr>
<tr><td colspan="2">입 찰 보 증 금</td><td colspan="3">해당사항없음</td></tr>
<tr><td>방치선박
전경사진</td><td colspan="4"> </td></tr>
</table>

위 물건은 방치 선박으로써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1년 9월 9일(목)**까지 우리시 철강항만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26일

광 양 시 장

담당 : 광양시 철강항만과(061-797-3365)

광양시 공고 제 2021 - 1627호

방 치 선 박 제 거 공 고

<table>
<tr><td colspan="2">발견장소</td><td colspan="4">광양시 광영동 산17-12번지 일원</td></tr>
<tr><td rowspan="3">선 박
제 원</td><td>선명(명칭)</td><td>미상</td><td>선박(어선)번호</td><td colspan="2">미상</td></tr>
<tr><td>선 적 항</td><td>미상</td><td>톤 수</td><td colspan="2">약 1 톤 (추정)</td></tr>
<tr><td>주요치수</td><td colspan="4">길이 4.4 m × 너비 1.7 m × 깊이 0.9 m</td></tr>
<tr><td colspan="2">관 리 청</td><td colspan="2">광양시</td><td>관 리 번 호</td><td>광양시 2021-6</td></tr>
<tr><td colspan="2">제거 예정일자</td><td colspan="4">2021년 9월 9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td></tr>
<tr><td colspan="2">제 거 방 법</td><td colspan="4">직권 제거</td></tr>
<tr><td colspan="2">공매장소 및 일시</td><td colspan="4">해당사항없음</td></tr>
<tr><td colspan="2">입 찰 보 증 금</td><td colspan="4">해당사항없음</td></tr>
<tr><td>방치선박
전경사진</td><td colspan="5">
</td></tr>
</table>

위 물건은 방치 선박으로써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1년 9월 9일(목)**까지 우리시 철강항만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26일

광 양 시 장

담당 : 광양시 철강항만과(061-797-3365)

광양시 공고 제 2021 - 1627호

방 치 선 박 제 거 공 고

발견장소	광양시 광영동 583-13번지 일원			
선 박 제 원	선명(명칭)	미상	선박(어선)번호	미상
	선 적 항	미상	톤 수	약 1 톤 (추정)
	주요치수	길이 5 m × 너비 1.7 m × 깊이 0.9 m		
관 리 청		광양시	관 리 번 호	광양시 2021-7
제거 예정일자		2021년 9월 9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제 거 방 법		직권 제거		
공매장소 및 일시		해당사항없음		
입 찰 보 증 금		해당사항없음		

방치선박 전경사진

위 물건은 방치 선박으로써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1년 9월 9일(목)**까지 우리시 철강항만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26일

광 양 시 장

담당 : 광양시 철강항만과(061-797-3365)

광양시 공고 제 2021 - 1627호

방 치 선 박 제 거 공 고

발견장소	광양시 태인동 303-135번지 일원			
선 박 제 원	선명(명칭)	미상	선박(어선)번호	미상
	선 적 항	미상	톤 수	약 1 톤 (추정)
	주요치수	길이 3 m × 너비 1.5 m × 깊이 0.7 m		
관 리 청		광양시	관 리 번 호	광양시 2021-8
제거 예정일자		2021년 9월 9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제 거 방 법		직권 제거		
공매장소 및 일시		해당사항없음		
입 찰 보 증 금		해당사항없음		

방치선박 전경사진

위 물건은 방치 선박으로써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1년 9월 9일(목)**까지 우리시 철강항만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26일

광 양 시 장

담당 : 광양시 철강항만과(061-797-3365)

광양시 공고 제 2021 - 1627호

방 치 선 박 제 거 공 고

발견장소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94-1번지 일원			
선박 제원	선명(명칭)	미상	선박(어선)번호	미상
	선 적 항	미상	톤 수	약 1 톤 (추정)
	주요치수	길이 3.5 m × 너비 1.5 m × 깊이 0.7 m		
관 리 청		광양시	관 리 번 호	광양시 2021-9
제거 예정일자		2021년 9월 9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제 거 방 법		직권 제거		
공매장소 및 일시		해당사항없음		
입 찰 보 증 금		해당사항없음		

방치선박 전경사진

위 물건은 방치 선박으로써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1년 9월 9일(목)**까지 우리시 철강항만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26일

광 양 시 장

담당 : 광양시 철강항만과(061-797-3365)

광양시 공고 제 2021 - 1627호

방 치 선 박 제 거 공 고

발견장소	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94-1번지 일원			
선 박 제 원	선명(명칭)	미상	선박(어선)번호	미상
	선 적 항	미상	톤 수	약 1 톤 (추정)
	주요치수	길이 4.4 m × 너비 1.7 m × 깊이 0.9 m		
관 리 청		광양시	관 리 번 호	광양시 2021-10
제거 예정일자		2021년 9월 9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		
제 거 방 법		직권 제거		
공매장소 및 일시		해당사항없음		
입 찰 보 증 금		해당사항없음		

방치선박 전경사진

위 물건은 방치 선박으로써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1년 9월 9일(목)**까지 우리시 철강항만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26일

광 양 시 장

담당 : 광양시 철강항만과(061-797-3365)

광양시 공고 제 2021 - 1627호

방 치 선 박 제 거 공 고

<table>
<tr><td colspan="2">발견장소</td><td colspan="4">광양시 다압면 도사리 94-1번지 일원</td></tr>
<tr><td rowspan="3">선 박
제 원</td><td>선명(명칭)</td><td>미상</td><td>선박(어선)번호</td><td colspan="2">미상</td></tr>
<tr><td>선 적 항</td><td>미상</td><td>톤 수</td><td colspan="2">약 1 톤 (추정)</td></tr>
<tr><td>주요치수</td><td colspan="4">길이 4 m × 너비 1.7 m × 깊이 0.7 m</td></tr>
<tr><td colspan="2">관 리 청</td><td colspan="2">광양시</td><td>관 리 번 호</td><td>광양시 2021-11</td></tr>
<tr><td colspan="2">제거 예정일자</td><td colspan="4">2021년 9월 9일 이후(공고 종료 이후)</td></tr>
<tr><td colspan="2">제 거 방 법</td><td colspan="4">직권 제거</td></tr>
<tr><td colspan="2">공매장소 및 일시</td><td colspan="4">해당사항없음</td></tr>
<tr><td colspan="2">입 찰 보 증 금</td><td colspan="4">해당사항없음</td></tr>
<tr><td>방치선박
전경사진</td><td colspan="5"> </td></tr>
</table>

위 물건은 방치 선박으로써 공유수면의 효용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등에 따라 위와 같이 직권으로 제거하고자 하니 이의가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2021년 9월 9일(목)**까지 우리시 철강항만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8월 26일

광 양 시 장

담당 : 광양시 철강항만과(061-797-3365)